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내규

개정일: 2020.02.10
제정일: 2006.09.01

담당부서: 경영전문대학원 - 행정팀(2123-2494)

제1조 (목적)
본 내규는 경영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원”이라 한다.) 학칙 제3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04.05.>

제2조 (위원회)
① 장학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<개정 2018.04.05.>
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 원 원장, 부원장, 각 과정별 운영교수, 행정팀장으로 하고,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02.10., 2010.02.22., 2007.12.17.>
③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행정팀장이 그 실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0.02.22.>

제3조 (위원회의 기능)
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8.04.05.>
1. 장학금 예산 및 기본정책
2.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의
3. 기타 장학금 관련 필요한 사항 <개정 2018.04.05.>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본항 신설 2018.04.05.>

제4조 (지급대상)
① 야간과정은 학비출처가 본인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20.02.10.>
1.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
2. <삭제 2020.02.10.>
3.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본 원에 기여한 자 <개정 2018.04.05>
4. <삭제 2010.02.22.>

5. <삭제 2020.02.10.>
② 주간과정은 학비출처가 본인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20.02.10.>
1. 성적 우수 장학금 (Academic scholarship): 입학성적이 탁월한 자
2. 재정 지원 장학금 (Need-based scholarship):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20.02.10.>
3. 공로 장학금 (Achievement scholarship): 봉사 또는 탁월한 학업 성취 등을 통해 본 원 발전에 기여한 자<제11조에서 본항으로 이동 2018.04.05.>
③ 주말과정은 소속기관에서 70% 이하의 등록금 지원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직전 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본항 신설 2020.02.10.>
④ 기타 본원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본항 신설 2020.02.10.>

제5조 (인원 및 금액)
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은 매 학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장학금액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2.10.>

제6조 (신청시기)
장학금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신청한다.

제7조 (자격)
장학금 신청 및 수혜를 위해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2.10., 개정 2018.04.05., 2010.02.22>
1. 재학생으로 수업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<개정 2020.02.10.>
2. 기준이 되는 학기의 학업성적이 3.5/4.3 이상인 자 <개정 2020.02.10., 2018.04.05.>
3. 기준이 되는 학기의 필요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<개정 2020.02.10., 2018.04.05.>
   가. 야간 및 주말과정 : 9학점 이상
   나. 주간과정 : 15학점 이상
4. <삭제 2020.02.10.>

제8조 (신청서류)
야간과정의 장학금 신청자는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다. <개정 2020.02.10., 2018.04.05.>

제9조 (선발)
① 야간 및 주말과정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기준으로 매학기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8.04.05., 2016.04.29., 2009.04.28.>
② 주간과정의 성적우수 장학금과 재정지원 장학금은 매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, 공로 장학금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선발한다. <개정 2020.02.10.>
③ 장학생수는 재학 학기 간 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 (기타)
①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,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본 원에 반환하여야 한다.
② 주간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원 관련 업무를 주당 10시간 내외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는 5시간을 추가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[본조 전문개정 2018.04.05.]

제11조 (Global MBA과정 장학금 지급조건) <삭제 2018.04.05.>

제12조 (비학위(최고경영자)과정 장학금 지급) <본조 신설 2020.02.10.>
최고경영자과정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(1)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2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2조 2항, 제7조 2호)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3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4조, 제11조)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(4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 제4조, 제8조, 제9조는 2009학년도 가을학기부터, 제10조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(5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2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)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. 제11조는 2010학년도 Golbal MBA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(6)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(제11조 제1항)는 201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한다.
(7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9조, 제11조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)는 2016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(8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1조, 제2조 제1항, 제4조 제1항, 제2항(기존 제11조 제4항에서 이동), 제7조 본문 및 제3호, 제4호, 제9조 제1항에서 제4항, 제10조, 제11조(삭제, 제4조 및 제7조로 이동)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(9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4조 제2항 및 제 9조 제 2항)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(10)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2조 제2항, 제4조 제1항에서 제4항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제2항, 제12조)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